

2021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2021. 2.



연수구

□ 정의 및 추진근거

- 적극행정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20. 8. 25. 일부개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2020. 3. 2.)

□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4대 분야 12개 과제 추진>

○ 적극행정 추진 역량 강화

-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실시
- 규제개혁 확산(평가조정팀), -적극행정 관련 민원처리제도 운영(민원여권과)
- 주민체감 적극행정 중점과제 관리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인사위원회를 통한 반기별 우수공무원 선발
- 인사위원회 운영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총무과)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감사실)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법무의회팀), 책임보험제도 운영 (총무과)

○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 소극행정 점검 및 조치, 소극행정 예방 시스템 운영 (감사실)

□ 행정사항

- (기획예산실, 감사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주요 과제별 추진사항 적극 추진
- (전부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적극적·능동적 업무 추진

1 적극행정 추진개요

□ 적극행정의 정의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로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새로운 아이디어, 전문적 지식·경험·역량을 통한 문제의 해결
 - 업무열의를 바탕으로 통상적 노력과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 처리 및 문제 해결
 -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적극행정 추진방향

-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책 부재
- 적극행정에 따른 감사·징계 우려
- 관례답습 등 공무원의 보수성

(前) 무사안일 · 복지부동 소극행정 유발



- 적극행정 **공직 문화 확산**
-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지원 강화**
-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後) 공무원들의 인식개선 및 적극행정 실천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으로
공직 사회의 변화와 국민 행복 증진 추진**

2 적극행정 추진배경

- 행정환경 급변, 행정수요 복잡·다양화,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대응 필요**
-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 시행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일부에서는 감사·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행정**
 - 한국행정연구원 실시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2016)」 결과,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미흡한 점(23.5%)”,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지게 되는 점(22.4%)”을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원인으로 꼽음 (행정안전부 「2019 적극행정 · 소극행정 사례집」 10p)
- 적극행정 저해요인 및 문제점

요인	문 제 점
감사	■ (감사 두려움) 감사·징계 경험, 정책방향 변경시 감사재개 우려
	■ (개인책임 귀속) 적극행정 결과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시 개인이 책임부담
	■ (의사결정 책임) 중요사안도 문제발생시 실무자가 책임부담
보상 및 인식관행	■ (인센티브 부족) 인센티브 사례 부재 → 진정한 체감 미흡
	■ (적극행정 인식) 적극적 운영이 가능함에도 충분한 설명 없이 거부처분
	■ (적극행정 문화) 문제발생시 개인책임, 조직내 적극행정 지지·독려 분위기 부재
법령	■ (경직적 법해석) 환경변화 대응 한계, 재량이 있어도 대부분 불허
	■ (자치법규 제약) 법령상 가능해도 자치법규의 소극적 입법·해석으로 거부 빈번
	■ (공유 및 이해부족) 제도개선내용 등 종합적 전파 미흡 → 현장공무원 이해부족

-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19.3월)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 수립(‘19.6월) 및 개정(‘20.8월)
- 연수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시행(‘20.3월) 및 관련 규정 정비등을 통하여 적극행정 추진 기반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근거 마련

3 2020년 적극행정 추진 실적

① 적극행정 지원 체계 구축

- 전담부서 및 책임관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 적극행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적극행정 운영 지침 및 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분기별 실적 관리를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실행력 확보
 - 국별 중점과제 선발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 (19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20.3.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적극행정 실행 계획 승인 및 반기별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시

- 적극행정 사례 교육 실시

- 일 시 : 2020. 8. 31. (월) 10:30 ~ 11:30 (1시간)
- 장 소 : 연수구청 3층 대회의실 (온라인 실시간 송출 비대면 강의)
- 강의주제 : 적극행정의 이해
- 강 사 : 김경진 교수 (인사혁신처 위촉강사)

- 새울행정시스템 적극행정 게시판 신설 및 우수 사례 공유
- 적극행정 홍보 음원 매주 월요일 청내 방송 실시
- 본청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개설 (2020. 1월)
 - 적극행정 게시판 및 우수공무원 국민 추천창구 마련

③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개혁 관련 추진 실적

- 규제개혁 우수과제 발굴 추진 및 포상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20. 9. 25.) 및 최우수과제 3건 600천원 포상
- 중앙부처에 법령 등의 개정 건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개선완료 : 공유숙박업 이용범위 내국인까지 확대
(외국인도시민박업 이용 대상 내국인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市 혁신과-332(2021.1.14.)호
- 전 직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 추진
 - 과 목 명 : 현장에서 배우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 추진기간 : 2020. 1월~11월
 - 추진방식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등 사이버교육 추진
 - 수강인원 : 총 242명

④ 적극행정 창구 운영

- (감사실) 적극행정 현장 창구 운영
 - 연수청학도서관 및 4개 동,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대상 자체감사 시
 - 감사 현장에서 조기에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여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직권면책 신청으로 감사부담 완화
 - 현장 면책 창구 운영을 통하여 감사대상자가 면책 신청을 할 경우, 면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안내문 및 신청서 등 비치)
- (민원여권과) 적극행정 민원창구 운영
 - 원스톱 민원처리 창구를 통하여 즉결 처리 가능한 민원의 원스톱 처리 체계 구축 및 사전심사 사전청구제 및 주요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 후견인제 운영

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실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20.9.28.)
 -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관련 규정 신설
- (감사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 ('20.6.1.)
 -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면책요건 완화 및 면책 신청기간 확대
- (감사실) 「소통과 공감의 컨설팅감사 추진 계획」 수립 및 운영 ('20.2.7.)
 - 추진실적 : 사전컨설팅 1건 및 자체컨설팅 60건 운영
- (총무과)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운영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인하고 직무수행의 안전성을 보장

⑥ 소극행정 근절 및 예방 (감사실)

- 소극행정 실태 주기적 점검 실시 : 3회, 소극행정 특이사항 없음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공직감찰 (20.1.16.~4.14.)
 -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활동 추진 (20.6.29~7.31.)
 - 코로나19확산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20.9.14.~10.4.)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연중상시)
 - (접수현황) 소극행정 관련 민원 등 381건 ('20.12월말 기준)
 - (처리결과) 총 381건 중 41건(감사실), 340건(해당부서) 처리완료
 - 신고민원 대부분은 불편사항 신고 및 처분에 대한 불만족민원으로, 처리결과 소극행정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없었음
- 법적 의무업무 사전알림 및 이행확인 시스템 추진 : 분기별 점검

비전	공직 사회의 실질적 변화 와 국민의 확실한 체감
전략	I. 적극행정 추진역량 강화 II.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III.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IV.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추진방향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적극행정 추진역량 강화	①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②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실시 ③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확산 ④ 적극행정 관련 민원 처리제도 운영 ⑤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및 우수과제 발굴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①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①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②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③ 적극행정 공무원 법제 등 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소극행정 점검 및 조치 ② 소극행정 예방 시스템 운영

Ⅱ. 적극행정 추진역량 강화

1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① 추진배경

- 적극행정 업무가 기획·감사·인사·민원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적극 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총괄부서 및 책임관 필요

②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및 추진체계

- 적극행정 책임관 : 기획예산실장
- 적극행정 전담부서

구 분	담당부서	역 할
총괄부서	기획예산실	▶ 적극행정 총괄 관리 및 운영 ▶ 적극행정 실행 계획수립 · 이행실적 점검 관리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교육 실시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법률 지원 (법무의회팀) ▶ 규제개혁 추진 (평가조정팀)
추진부서	감사실	▶ 사전컨설팅 확산·제도 홍보 ▶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운영 ▶ 소극행정 예방·엄정조치를 위한 노력
	총무과	▶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선정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제도 운영
	민원여권과	▶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운영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전 부서	▶ 자발적인 적극행정 추진 및 우수사례 제출

①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11

②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실시 12

③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확산 14

④ 적극행정 관련 민원 처리 제도 운영 15

⑤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및 우수과제 발굴 16

③ 적극행정 실행계획 공개·실적 점검

-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알림



- 분기별 적극행정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서별 우수사례 발굴 추진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로 조직문화 확산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하여 적극행정 문화 정착

2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실시

① 적극행정 관련 직원 교육 실시

-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사례교육·심화교육 실시
 - (기본교육)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규제개혁 사례 등 맞춤형 적극행정 직원 교육실시를 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 (교육시기) 2021. 상반기
 -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인사혁신처·시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운영
 - (심화교육) 부처별 적극행정 방문교육 활용*
 - *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행안부),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인사처), 찾아가는 법제가이드라인 출장교육(법제처), 적극행정 지원제도 및 주요사례 교육(감사원) 등 심화교육 연계 추진 (필요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등과 연계 추진)
- 부서별 행사·워크숍 등에서 적극행정 틈새 교육 추진 (동영상 시청 등)

② 전 직원 적극행정 사이버 교육 이수

- 나라배움터 및 시 인재개발원 「적극행정의 이해」 사이버 교육 이수
 - (교육내용) 적극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이해, 사전컨설팅제도의 이해,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이해, 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의 이해 등
 - (교육시기) 2021. 4월~9월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운영 지침에 따라 추진 시기 및 내용 변경 가능
- 분기별 부서별 교육 이행실적 점검 및 교육 이수 독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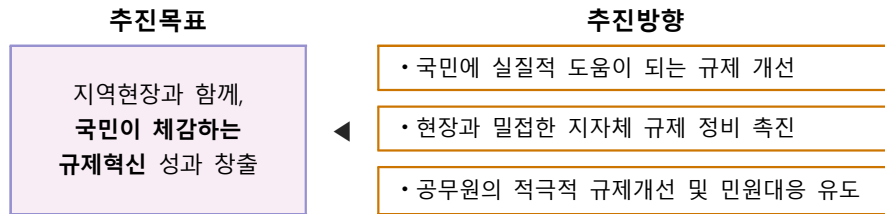
③ 적극행정 인식 개선 홍보 추진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규모 행사 및 집합이 불가능함에 따라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
- 새울행정게시판 및 본청 홈페이지 「적극행정」 전담 코너 운영
 -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 소개 및 적극행정 관련 제도 안내
 -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우리 구 추진사항 및 성과 홍보
- 새울행정시스템 게시판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공유
 -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게시를 통하여 적극행정·소극행정에 대한 개념 이해를 통한 인식 개선
- 매주 월요일 적극행정 홍보 음원 청내 방송

④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구민 추천제도 운영

- (목표)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
- (운영) 구 홈페이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창구' 상시 운영
- (홍보) 포스터·리플릿 제작 및 배포, SNS 및 홈페이지 게시

3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확산 (평가조정팀)



□ 2021년 규제개혁 관련 중점 추진 사항

- 온·오프라인 규제건의 창구 운영
 - (온 라 인) 구 홈페이지 「행정규제개선 건의 창구」 운영
 - (오프라인)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 전 부서 규제개혁 과제 발굴
 - 발굴 과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 개정 건의 및 우수과제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자치법규 행정규제 심사
 -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해 행정규제 여부를 사전심사하고 검토결과 규제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무분별한 규제난립 방지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전 부서 규제개혁 발굴과제 등 우수과제 선정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4 적극행정 관련 민원 처리 제도 운영 (민원여권과)

□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 개별 부서에서 관할하는 인허가·등록·신고 등 민원업무를 민원실 또는 전담부서에서 접수·처리하여 민원편의 제고
- 통신판매업 신고, 조리사 및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등 5개부서 27종 업무

□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운영

▷ 사전심사 청구제도

접수단계	○민원인 : 접수창구(민원여권과)에 사전심사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처리단계	○주무부서 : 청구 검토 처리 (필요시 실무종합심의 개최)
▼	
통보단계	○주무부서 : 처리결과 통보 (민원인 및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 사전심사 청구서 처리부 정리

- 민원인이 사전에 약식 서류를 제출하여 관련부서의 검토나 심사를 받아 민원의 처리가능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필요한 요건을 알려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
- (대상)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8개 부서 19종 민원 사무

▷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사무 처리 상담 및 안내 등을 함으로써, 민원 1회방문 처리제와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를 구현

5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및 우수과제 발굴

□ 발굴사유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생활 분야의 체감형 중점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반영을 통한 특별 관리

□ 선정기준

- 주요 현안과제 및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주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과제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사회적 현상과 관련하여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 및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하여 기존 제도를 답습하지 않고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중점과제 선정 내역 (세부관리카드 붙임1 참조)

연 번	제 목	부 서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평생교육 체계 구축	평생교육과
2	'연수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복지정책과
3	지역화폐 기반 공공배달앱 「배달e음」으로 상권 활성화	경제지원과
4	연수구 지적재조사사업 브랜드화 추진	토지정보과
5	코로나19등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질병관리과

- 교육·복지·경제·도시분야·코로나19 대응 등 각 국별 발굴

□ 향후계획

- 중점과제 추진현황 지속 모니터링 및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 우수과제 지속 발굴 (붙임5서식) 및 월별 카드뉴스 제작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대외기관 입상 시책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시 인센티브 부여

III.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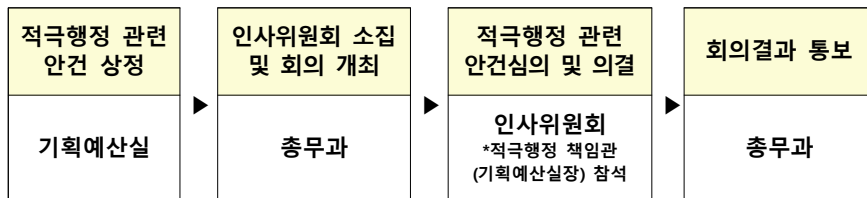
①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	18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20

1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 (총무과)

① 인사위원회 적극행정 관련 회의 구성 및 운영(안)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에 따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징계의결 등 적극행정과 인사업무의 연계성 강화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 합리적,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원
- (구성) 적극행정 관련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운영) 인사위원회의 적극행정 관련 회의는 **적극행정 책임관**(기획예산실장)이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을 지원
- (추진절차)



- (추진시기) 연 2회 이상 적극행정 관련 회의 개최
 -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
 - 2021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기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른 안전

②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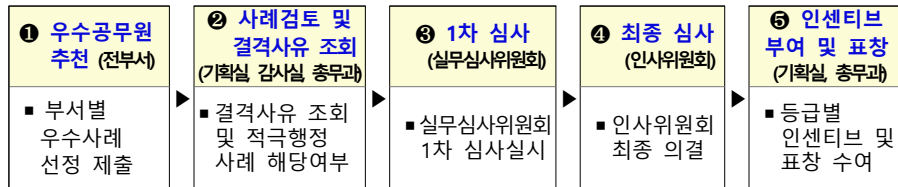
- 위원회는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하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다만, 의견제시 및 감사기구의 자문 안전 심의 시 안전 관련 전문가 및 감사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의결 진행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획예산실) ※ 별도 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

- (신청대상) 적극행정 실적(우수사례)이 있는 직원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 규제관련 법률·자치법규 개정, 부당한 행태개선 등 적극행정 추진사항 (수상 내역이 있는 실적 제외)
- (선정방법) 추천 및 개별신청을 통해 내부(1차) 및 외부 위원 포함한 인사위원회 심사(2차)를 통해 우수 공무원 선정
 - 선발(안) : 최우수·우수·장려 등급에 따라 선발
- (평가방법 및 시기) 정성평가(우수사례), 반기별
- (기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 (심사)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

* 단순히 실적과 능력이 뛰어난 우수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성과를 기준으로**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과제의 중요도·난이도·확산가능성 등을 심사

- 추진절차(안)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등 공정·투명한 절차 마련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총무과)

- (부여시기) 연 2회 / 반기별 1회*
- (부여방법)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 부여
- (선정규모) 최종 심사 점수에 따라 등급별 선정
- (평가기준안) 구민체감도, 중요도, 적극성, 창의성, 확산가능성 등
- (성과와 개인희망고려)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성과의 탁월성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대상자 개인희망 고려**
-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 중 50% 이상 행정안전부 제시 파격적 인센티브* 4종 중 1개 이상 부여
 < 행정안전부 우대등급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가이드라인(안) >

우대 등급	파격적 인센티브(50%)				기타 인사상 인센티브(50%)				
	①특별 승진 (4급이하)	②특별 승급 (6급이하)	③성과급 최고등급 (모든직급)	④교육훈련 우선선발 (모든직급)	⑤승진 가점 (5급이하)	⑥근속 승진기간 단축 (7급이하)	⑦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4급이하)	⑧포상 휴가 (모든직급)	⑨희망 전보 (45급 이하)
최우수				장기					
우수				장기					
장려					단기				

* 단, 구체적 인센티브는 「2021년 연수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의 범위에서 부여

- (성과와 보상의 시차 단축) 보상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인사상 인센티브는 우수공무원 선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부여
- (대외입상)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시,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은 우수공무원 선발(최우수등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실시
- (협업우대) 다수의 협업으로 성과를 얻은 경우 등은 해당 업무 담당자를 모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선발
- (이후계획) 인사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상·하반기 연수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수립 예정

I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1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23
2	적극행정 먼책제도 운영	25
3	적극행정 공무원 법제 등 지원	26

1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감사실)

사전컨설팅제도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소속기관·부서가 감사부서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1 대상기관

-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산하기관(보건소,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법인
-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지원 받는 기관·단체 등

2 사전컨설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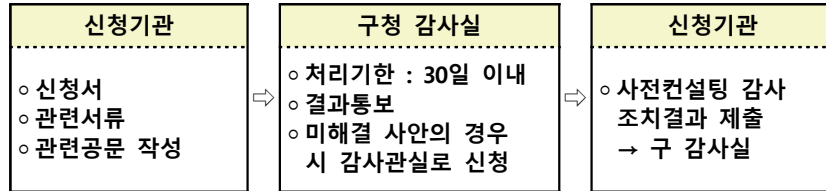
-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관련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단순히 법령 등 해석만을 신청한 경우 제외)
- 그 밖에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경우
 - * 법령이 명확한데도 단순 민원해소 목적 등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려 하거나 충분한 자체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청 제한

✓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사무

- 법령의 해석(해당 법령 소관부처), 감사·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무
- 소송 및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사무
- 기타 진정민원 등 컨설팅감사의 취지 등에 부합되지 않는 사무

③ 운영절차

- 소속기관·부서에서 '사전컨설팅 신청서' 를 구 감사실에 송부하면 담당자가 접수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市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 신청



※ 흐름도



④ 사전컨설팅감사 효과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 면제

2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감사실)

① 자체감사의 적극행정 면책

- (면책개요) 지방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
-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 업무 전반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
- (면책요건) 공익성, 적극적 처리 결과,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 *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 기준으로 적용함
- (면책제외) 금품 수수, 고의·중과실,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등
- (운영절차) 면책여부 심사를 위해 면책심의회 구성·운영
 -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책심의회」 : 위원장(부구청장) 외 8명
 - * 사안이 간단한 경우 감사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결정하며, 복잡한 사안은 감사 후 적극행정 면책심의회를 통하여 면책 여부 결정

② 자체감사 시 직권 현장면책 활성화 및 현장면책 창구 운영

-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운영 지침(20.6월)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9조)
- (개요)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확대 운영으로 '감사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 (면책창구) 감사현장에서 적극행정 면책 컨설팅 창구 운영
 - 감사대상자가 면책 신청을 할 경우, 면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 면책 요건, 면책에 필요한 증빙 서류 등 신청서 작성 기법 제시
- (현장면책) 감사현장에서 조기에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여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직권면책 신청으로 감사 부담 완화

①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법무의회팀)

-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
- 우리구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
- 세부내용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지침」
 -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 고발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당한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구분	변호사 지원비용	비고
징계의결	200만원 이하	
고소, 고발	500만원 이하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
민사상 책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② 2021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운영 (총무과)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제도 가입을 통하여 우리 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인하고 직무수행의 안전성 보장
- 가입인원 : 대민업무 및 허가·승인업무 담당자 180명 내외
- 보험기간 : 2021. 1. 1. 0시 ~ 2021. 12. 31일 24시
- 보장범위 : 업무로 피소를 당해 발생한 방어·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
 - (민사) 공무원의 경과실로 발생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만 보장
 - (형사) 무죄인 경우에 한하여 기소 전 방어비용, 기소 후 소송비용 보장
- 보상한도 : 민·형사 구분 없이 1건당 3천만원, 연간 1인당 총 3회
- 소요예산 : 1,800천원 범위

Ⅴ.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소극행정 점검 및 조치

28

② 소극행정 예방 시스템 운영

29

1 소극행정 점검 및 조치 (감사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 유형 및 판단기준

분 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소극행정 실태 주기적 점검 실시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분기별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과 병행하여 소극행정 행태 자체 점검 실시

○ 소극행정 엄정 조치

-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활용 교육하여 소극행정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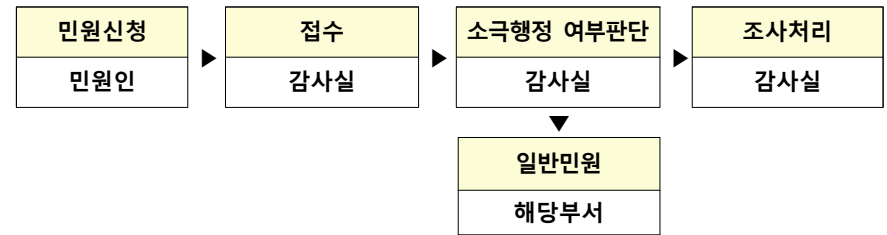
2 소극행정 예방 시스템 운영 (감사실)

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민원 처리

- (운영) 접수된 소극행정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해 당 : 원 처분 취소·변경, 담당자 징계요구 등 엄중 조치
- 미해당 : 담당부서에서 민원해결 및 회신하도록 부서재지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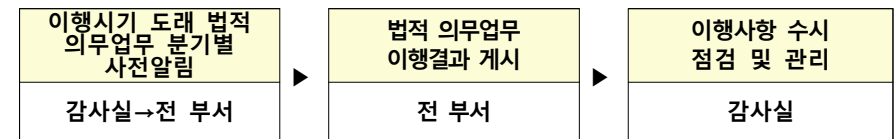
○ (추진절차)



② 법적 의무업무 사전알림 및 이행확인 시스템 추진

- (대상) 전부서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는 법적 의무업무 제출
- (내용) 법적 의무업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위해 주기적 사전 알림 및 이행사항 확인 시스템 마련

○ (추진절차)



- (기대효과) 담당자 변경 등으로 법적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하는 경우 사전 차단 및 의무업무 시행 만료 전 이행여부 확인을 통하여 책임 있는 행정 환경 조성

VI. 향후 계획 및 참고자료

1 향후 계획

□ 향후계획

- 전 부서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알림 (‘21.2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반기별 선발 (2021년 상반기·하반기)
- 행정안전부 「2021년 적극행정 운영 지침」 하달 후, 필요시 추진계획 보완
- 각 추진 과제별 별도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

□ 협조사항

- (기획예산실, 감사실, 총무과, 민원여권과)
 - 중앙부처 등 관계법령 및 지침 개정 시기에 맞춰 자체 지침 보완
 - 주요 과제별 추진사항 적극 추진
- (전부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적극적·능동적 업무 추진
 - 전 직원 적극행정 관련 교육 이수
 - 적극행정 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 (상시)
 - 적극행정 이행상황 점검(분기별)·전달사항 이행 등 협조 등

참고) 적극행정 제도 적용 흐름도 1부.

붙임) 1. 적극행정 중점과제 5부.

2. 적극행정 과제별 추진부서 현황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1부.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1부.

5.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서식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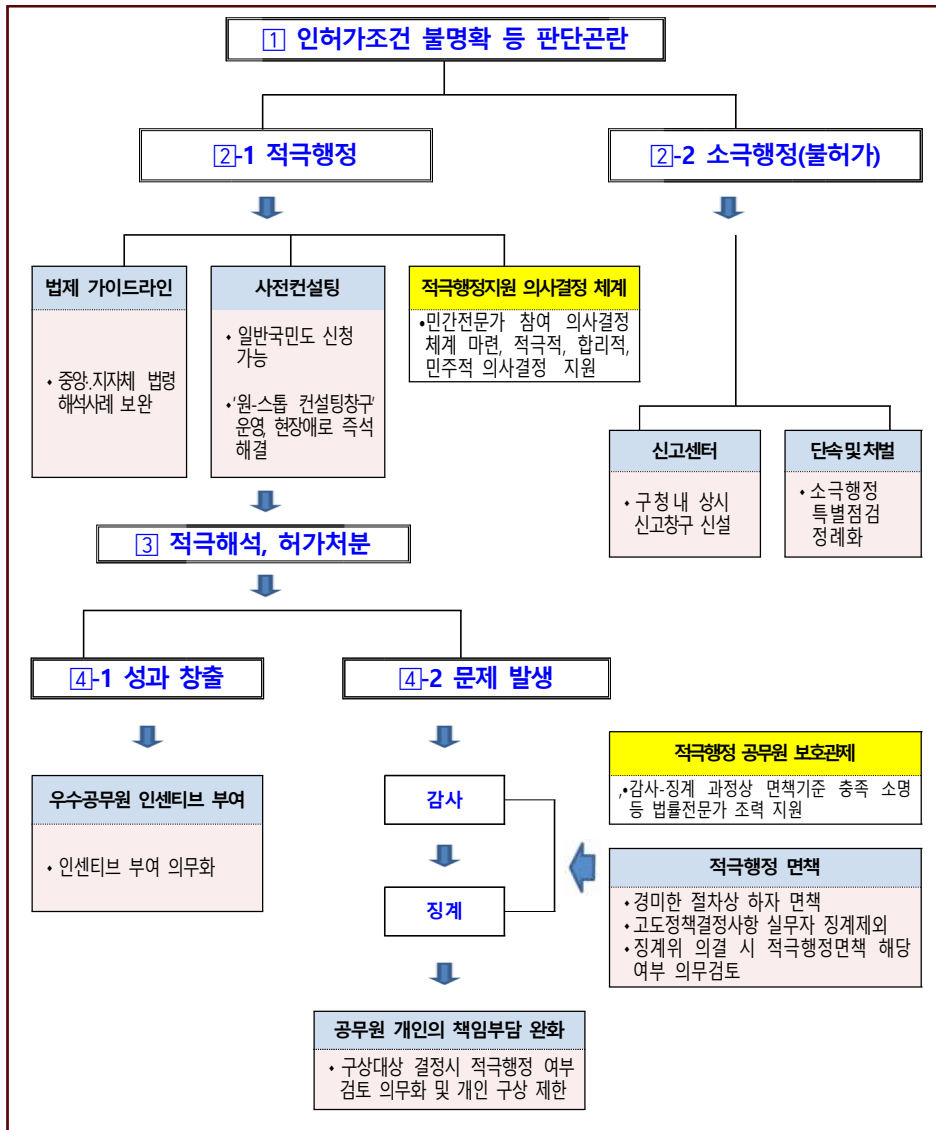
1	향후 계획	31
---	-------	----

2	(붙임1) 중점 추진과제 세부내용	33
---	--------------------	----

3	(붙임2) 적극행정 과제별 추진부서 현황	42
---	------------------------	----

4	(붙임3,4,5) 관련 법규 및 서식 등	43
---	------------------------	----

[참고] 적극행정 제도 적용 흐름도



붙임1 적극행정 중점과제

1 교육분야 중점과제

제 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평생교육 체계 구축
부 서 명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 송도글로벌평생학습팀)

1 현황/문제점/필요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 부상에 따른 새로운 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인류 공통의 과제에 직면한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정보와 강좌 제공

2 사업개요

- 대 상: 연수구민 누구나
- 내 용: 새로운 평생교육체계 구축 및 미래평생교육 수요 충족
- 사 업 비: 301,100천원(구비)

사 업 명	사업비(천원)	비고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연수)	65,000	온·오프라인 병행(줌, 유튜브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송도)	65,000	온·오프라인 병행(줌, 유튜브 등)
평생학습 오디오 채널 운영	40,000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대학연계 평생학습 활성화	80,450	온·오프라인 병행(줌, 유튜브 등)
우리동네 배달학습	45,000	찾아가는 맞춤형 배달강좌
평생학습 강사학교	5,650	평생교육 인적자원 육성
합 계	301,100	

③ 2021년도 추진 계획

- [인프라 구축] 온라인 스마트 플랫폼 구축 : 연수구평생교육센터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럽 등 활용
- [콘텐츠 개발] 미래평생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온라인 강좌 개발운영
 - 시니어 세대를 위한 새로운 평생교육환경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핸드폰으로 강좌 수강하기, 유튜브 활용하기) 등
 -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독서, 취미 등)
 - 연수 여행프로그램 개발·운영(지역탐방, 문화산책 트레킹 코스 등)
 - 대학과 연계한 직업능력향상교육 운영(직장인, 예비창업자 등)
 - 직장인을 위한 야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문화예술 탐방 등)
- [인적자원 육성]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평생학습 강사학교 등 운영

④ 기대효과

- 최근 트렌드에 발맞춘 비대면(동영상) 콘텐츠 중심의 매체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플랫폼을 이용한 평생교육 정보와 강좌 제공을 통해 구민의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종합적·체계적 평생교육 정보제공으로 평생학습도시의 신뢰성 확보

2

복지분야 중점과제

제 목	‘연수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부 서 명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7672)

① 현황/문제점/필요성

- With-Corona 시대 긴급 돌봄 전달체계 구축
- 공공과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지역 긴급 돌봄문제에 대한 해결과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② 사업개요

‘연수형 통합돌봄’이란?

영유아, 아동·청소년·여성, 노인, 장애인, 보건, 취약계층, 기타 7개 분야에서 주민의 돌봄 욕구에 공공이 적극 대응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한 구민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념

○ 지역사회 돌봄(공공·민간) 자원 구축 - 7개분야

- 영유아, 아동·청소년·여성, 노인, 장애인, 보건, 취약계층, 기타(민간)

○ 찾아가는 돌봄 SOS 전담반 운영

- 돌봄서비스 구축 TF 팀 구성
- 찾아가는 돌봄 SOS 전담반 구성 및 운영
- 우리동네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6대 돌봄 서비스)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체계 구축

- 연수희망지기 및 우리동네 희망지기 행동상점 등 인적자원망 활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개설

③ 2021년도 추진 계획

- 복지사각지대 카카오톡 채널 개설.....2021.2월
- 연수지역자활센터 업무 협약..... 2021.2월
- 돌봄SOS 전담반 통합교육 실시.....2021.2월
- 연수형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2021. 연중

④ 기대효과

- 연수구 지역 돌봄 체계 구축추진으로 주민의 돌봄 욕구에 공공이 적극 대응하고, 파편적으로 진행되던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

3

경제분야 중점과제

제 목	지역화폐 기반 공공배달앱 「배달e음」으로 상권 활성화
부 서 명	경제지원과 경제지원팀 (☎7794)

① 현황/문제점/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의 회복을 위해 연수E음 플랫폼 기반의 배달앱을 도입하여 상권 침체를 완화

②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연수E음 결제가능 및 배달 가능 업소(1,500~2,000여개)
- 내 용 : 별도의 중개수수료, 광고료 없는 공공배달앱
→ 혜택+ 가맹점, 청년 점포 우선 적용
- 사 업 비 : 360,000천원

③ 2021년도 추진계획

- 연수구 공공배달앱 「배달e음」 운영
 - (이용자 혜택)연수e음 캐시백 및 할인 혜택(10~24%) ⇨ 높은 할인별 확인 가능
 - (소상공인 혜택)배달앱 사용시 별도의 광고료, 중개수수료 없음
 - 노출 순위 : 거리기준, 주문건수, 위생등급 등 검토
 - 주문접수시 알람기능, 배달대행 프로그램과 연동성 확보
- 혜택+ 2,000점포 확대 인센티브 전략으로 활용
- 2021년 2월 8일 시범운영 도입 후 3월 정식 런칭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④ 기대효과

- 골목상권의 배달 수수료, 광고료 경감·완화를 통한 상권 침체 완화
- 25만 이용자가 확보된 연수e음과의 높은 연계성을 통한 성공적 도입 가능

4	도시분야 중점과제
제 목	연수구 지적재조사사업 브랜드화 추진
부 서 명	공간정보과 지적재조사팀 (☎7596, ☎7597)

1 현황/문제점/필요성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사후관리·홍보시책·적극행정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연수구만의 특색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2 사업개요

- 대 상 : 연수구 관내 지적재조사지구
- 추진배경
 -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방행정혁신의 대표적인 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
 -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사업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국가정책사업의 시너지 효과 확장
- 추진전략
 - **(브랜드화)** 차별화된 추진전략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 3개분야(적극행정·홍보시책·사후관리)의 6개 세부사업으로 추진
 - **(신규사업)** 토지가치 및 주민만족도 상승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 **(협업구축)** 부서와 기관간의 새로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
 - **(홍보시책)** 사업의 가치와 지향을 담은 캐릭터·슬로건·로고 제작으로 사업의 모토 역할 극대화

○ 추진내용

연수구 지적재조사사업 브랜드화

적극행정	지적재조사측량 현장상담실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상담
	지적재조사조정금 사전 감정평가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미리 알아봄으로써 본인의 토지 경계 및 면적 결정에 도움

홍보시책	연수구만의 지적재조사사업 TRADEMARK 제작	연수구만의 지적재조사사업 캐릭터·로고·슬로건을 자체 제작하여 주민 홍보 효과 극대화
	다양한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영상 제작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알기쉬운 설명을 주민들이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홍보영상으로 제작

사후관리	지적재조사사업 공인 인증 제도	토지 등록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연수구에서 인증하여 토지의 가치상승 및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상승
	지적재조사사업 Special Care Service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경제복원 측량 및 확인·설명 등을 무료로 제공

3 2021년도 추진계획

- 연수구 지적재조사사업 브랜드화 추진 계획 수립 2021. 2월
 - ※ 지적재조사사업 브랜드화를 위한 각 세부 추진 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
-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영상 제작 2021. 3월
- 지적재조사측량 현장상담실 운영 2021. 3월 ~ 9월
- 지적재조사조정금 사전감정평가제 실시 2021. 4월
- 지적재조사사업 TRADEMARK 제작 2021. 5월
- 지적재조사사업 공인인증제도 실시 2021. 5월
- 지적재조사사업 Special care service 실시 2021. 6월

4 기대효과

-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만족도 상승
- 타지역과 차별화된 연수구만의 특색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의 다양한 홍보 효과 창출로 사업 효과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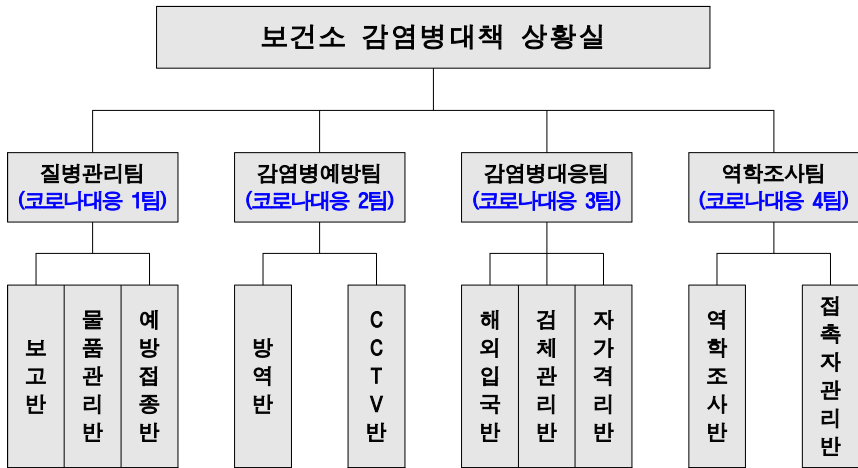
5	보건분야 중점과제
제 목	코로나19등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부 서 명	질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감염병대응팀

1 현황/문제점/필요성

- 코로나19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원인 규명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및 대응 조직 구축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등 대비

2 사업개요

- 대 상 : 지역주민
- 기 간 : 연중(비상시)
- 내 용
 - 코로나19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4개팀 10개반 편성 (120명) / 감염병 유행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코로나19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 코로나19 등 감염병 선별진료소 운영 (3개소 이상)
- 코로나19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 사전 예방 홍보 강화 등

3 2021년도 추진계획

- 코로나19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연중
- 코로나19 등 감염병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운영 연중
- 코로나19 등 감염병 해외입국자, 접촉자 자가격리자 관리 연중
- 관내 확진자 및 타 구 확진자 이동 동선 발생 시 역학조사 연중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체결 및 보건소 접종 실시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접종 실시)

4 기대효과

-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조기발견, 원인규명, 전파 차단 등을 통한 감염병 발생의 최소화 및 지역 확산 방지
-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실시로 신종·재출현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퇴치기반 조성

붙임2 적극행정 과제별 추진부서 현황

주요 내용(과제)		추진부서	추진일정
I. 적극행정 추진 역량 강화			
①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기획예산실	연	중
②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실시			
③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확산	기획예산실	연	중
④ 적극행정 관련 민원 처리제도 운영	민원여권과	연	중
⑤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	전 부 서	연	중
II.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①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	총 무 과	반 기 별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기 획 예 산 실 총 무 과	반 기 별	
III.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①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감 사 실	연	중
②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감 사 실	연	중
③ 적극행정 공무원 법제 등 지원	기 획 예 산 실 총 무 과	연	중
IV.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소극행정 점검 및 조치	감 사 실	연	중
② 소극행정 예방 시스템 운영			

붙임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2020.03.02 조례 제12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 칙[2020.3.2. 조례 제 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시행 2020. 8. 25] [대통령령 제30969호, 2020. 8.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해당 시·군·구가 소속된 시·도의 감사기구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의 경우(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목개정 2020. 8. 25.]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적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제목개정 2020. 8. 25.]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제목개정 2020. 8. 25.]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25.>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면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25.>
-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면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8. 25.>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부칙 <제30969호, 202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붙임5 적극행정 사례 제출 서식 (총 2장 이내)

제 목					
제도 활용 ^① (일자)	(‘00. 00. 00.)	분 야 ^②			
자치단체명	00도 00시	부서명	00과	전화번호	000-000-0000

① 현황/문제점/필요성

○

○

-

② 조치사항

○

○

③ 결과/효과

○

○

④ 관련규정

○

○

참고자료

필요시 사진, 보도자료 등

* ①제도활용 구분 : 1)적극행정 지원위(인사위원회), 2)사전컨설팅, 3)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4)기타 적극적 자세
②분야 구분 : 1)경제분야(건축,개발,산지,농지 등) 2)사회분야(복지,위생,환경 등) 3)기타분야